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조례등에서 시 단위에 설치 운영하도록 정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가름하여 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자문·심의·연구 및 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다른조례, 규칙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기획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